

# 2023학년도 제1학기 학사운영 방안

- 2023. 2. 15, 교무처 -

## 1. 관련

-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10383(2022. 9. 26.) "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안내"
-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-854(2023. 1. 27.) "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따른 학교(대학) 적용사항 안내"

## 2. 수립 배경

-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7판, 22. 9. 26) 반영 유지
-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 반영
- 정부의 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 제1학기 학사운영 방안 수립

## 3. 주요 운영방안

구분	주요내용
시행일자	2023. 3. 2.(목)부터
수업 운영방식	대면수업
비대면수업	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교과목(e/b/s-러닝)
고사원칙	대면고사 원칙(e-러닝 강의 포함)
성적평가	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성적평가 시행 - 상대평가를 원칙으로, 교과목 특성/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,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
수업 중 방역관리	- 마스크 착용의무: 학교 통학,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- 마스크 착용권고: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, 합창 수업,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, 입학식·졸업식 등에서 합창 등 - 수업 중 환기 실시 등 방역조치 준수
보강주간 운영	공휴일에 따른 보강주간(15주차) 시행 - 보강주간: 2023. 6. 8.(목)~6. 14.(수) - 14주 수업 및 보강이 완료된 강좌에 한하여 보강주간에 기말고사 시행 가능 -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 휴·보강 진행을 통해 15주차 수업 및 고사를 진행하여야 하며, 수강생 전원의 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만 수업 및 고사 가능

※ 학사운영 방안은 교육부 지침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.

※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칙, 학사에 관한 규정, 각종 시행세칙 및 별도 지침에 따름.

## 4. 세부 운영방안

### 가. 대면수업

- 교·강사는 강의시간표에 편성된 해당 주차/요일/교시에, 해당 강의(실습)실에서,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사전 예고한 교과목 개요/목표/교재/성적평가방법/주차별 수업계획 등에 따라 **대면으로 강의를 진행**하여야 함.

### 나. 비대면수업

- 원격수업으로 사전에 승인된 e/b/s-러닝 중 온라인시간으로 편성한 교시에 한함.

### 다. 출결

- 교·강사는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하여 블루투스 또는 호명방식으로, 해당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출결사항을 입력하여, 수강생이 출결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 출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업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함.

### 라. 중간/기말고사

- 모든 고사(중간/기말고사 등)는 **대면고사로, 해당 수업일자/요일/교시/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**으로 함.
- **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·강사가 참여함을 필수**로 하며,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만 달리 할 수 있음.
- **교과목에 따라 고사기간 대면고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(과제제출 등)으로 대체할 경우 고사기간에 대면수업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.**
- e-러닝에 대한 고사(중간/기말고사 등)는 **대면고사로 진행함을 원칙**으로 하나 수강생과 협의하여 시험일과 시험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음.

**※ e-러닝 강좌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온라인 시험 허용**

- 모든 강좌의 고사 시행이 해당 강좌의 수업일자/요일/교시/강의실과 상이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, **날짜 및 시간 변경 시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 휴·보강 신청 메뉴에 등록을 하여야 함.**

### 마. 성적평가

- 상대평가를 원칙으로, 교과목 특성/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,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함.

### 바. 공휴일 일괄 휴·보강

- 공휴일에 따른 휴강은 교무처에서 보강주간에 해당 보강일자를 일괄 지정함.
- 보강주간에는 공휴일에 따른 일괄보강 또는 개인사정 등에 따라 사전 승인된 보강만 진행함. **(승인 절차 없이 단순 수업시간 변경 운영은 불가함)**
- 보강주간에는 학기 중 공휴일로 인하여 지정보강일에 배정된 강의 진행이 우선 이므로, 휴·보강 진행 시에는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여 수강 학생의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.

사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등으로 증빙서류가 있을시 공결신청을 통해 해당기간을 출석인정 받도록 하며, 예비군(학생)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아. 수업 관련 방역 관리

- 방역수칙(손소독, 실내 마스크착용, 강의실 1일 3회 이상 환기,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)은 계속 준수
- 자가검사 활성화: 의심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즉각적 대처 및 확산 방지 필요
- 신속항원검사 시행: 자가검사키트 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시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시 의료기관 및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준수

5. 코로나19 확진시 수업운영

구분	본인 확진	동거인 확진
교·강사	비대면수업(e-Campus 활용) 또는 휴·보강시행 - 검체채취일 기준 7일	신속항원검사 시행 - 음성인 경우 출강
학생	결석계(질병) 신청(증빙서류첨부) - 검체채취일 기준 7일	신속항원검사 시행 - 음성인 경우 등교

- 학생 확진시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결석계(질병)을 신청하여 출석인정을 받도록 하며,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·강사는 비대면수업, 학습자료 제공, 과제부여 등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교·강사 판단하에 수업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.
- 교·강사 확진시 비대면수업(7일)으로 진행하며, 비대면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휴강 신청 후 보강을 진행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.
- 고사기간 중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고사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고사, 과제대체 등으로 학생의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.

## 【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】

구분	방역당국 기준	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(학교·학원 적용)
<b>착용 의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감염취약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학교 통학, 학원 이용, 행사·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<b>단체 버스</b> 등의 <b>차량 이용</b> 시 탑승자</li> </ul>
<b>착용 권고</b>	① 코로나19 <b>의심 증상*</b> 이 있거나, 코로나 19 <b>고위험군**</b> 인 경우 *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 **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	<b>좌동</b>
	② <b>코로나19 의심 증상</b> 이 있는 사람 또는 <b>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</b>	<b>좌동</b>
	③ 최근 <b>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</b> 했던 경우 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	<b>좌동</b>
	④ 환기가 어려운 <b>3밀(밀폐·밀집·밀접)</b>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	<b>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</b> 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되어 있는 경우 ※ 현장 체험학습, 수학여행 등 포함
	⑤ <b>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</b> 가 많은 경우	《사례별 권고 기준》 1. 교실, 강당 등에서 <b>합창</b> 수업 시 2. <b>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</b> 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에서 <b>응원 합성·대화</b> 등으로 인한 <b>비말 생성 행위</b> 가 많은 경우 3.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·졸업식 등에서 <b>교가·애국가</b> 등을 <b>합창</b> 하는 경우 4. 그 밖에 <b>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</b> 가 많아 <b>교육시설의 장</b> (학교장 등)이 필요하다고 <b>판단</b> 하는 경우